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의3서식] <신설 2022. 12. 29.>

[ ]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[ ]휴업
[ ]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[ ]폐업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10일

신청인	명칭	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(유치사업자) 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연락처(휴대전화)
	소재지	

휴업기간 또는 폐업일	휴업 또는 폐업 해당 여부 휴업 [ ] 폐업 [ ]		폐업일(최종사업일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) 년 월 일
	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		재개업일(휴업종료일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) 년 월 일
	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	(주소) (전화번호)	
	휴업 또는 폐업 사유 (해당되는 [ ]에 "√"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)	01. 대표자 사망[ ] 02. 고령(건강상)[ ] 03. 학업목적[ ] 04. 경영상 어려움[ ] 05. 취업[ ] 06. 의료인 면허취소[ ] 07. 그 밖의 사유[ ]	

「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(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)의 휴업(폐업)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2.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한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서 등 법인 내부 의결기관의 결의서(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
유의사항

1.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2.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휴·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수	→	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	→	결재	→	휴업 또는 폐업 처리
신고인		시·도		시·도		시·도		시·도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